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□ 아카시아 리지둘라 스포츠 보조식품 원료로 사용금지



<사진. 아카시아 리자드룰라>

- 호주 보건당국은 스포츠 보조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온 아카시아 리지둘라 (Acacia rigidula 혹은 blackbrush acacia)를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규 식품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함. 이에 따라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수입이 불가
- 호주 보건 당국은 이 성분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식품으로 사용된 전례가 없으며, 사람에게 소비될 경우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
- 1992년 제정된 수입식품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,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끼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법임
-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 2.9.4는 다양한 아미노산, 비타민, 미네랄 및 영양 물질을 공식 스포츠 보조 식품에 첨가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. 해당 규정의 1.3.1 식품 첨가물과 1.4.4 금지된 식물과 곰팡이는 이러한 식품에 첨가될 수 있고 첨가될 수 없는 원료를 규정함

- 수입식품관리법에 따르면, 식품이 사람의 건강에 위험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면, 불량식품으로 간주되어 호주 내 수입 및 거래가 금지됨. 현재 사용이 금지된 물질의 예는 다음과 같음
 - 카다린(Cardarine)
 - 메틸헥사민으로 알려진 1,3-디메틸아밀아민(DMAA)
 - AMP 시트레이트로 알려진 1, 3-디메틸부틸아민(DMBA)
 - 페르시안 호두라고 알려진 1, 5-디메틸헥실아민(DMHA)
 - 1,4-디메틸펜틸아민(DMPA)
 - 2, 4-디니트로페놀(DNP).
 - 이부타모렌(Ibutamoren)
 - 멜라토닌(Melatonin)
 - 페니бут(Phenibut)
 - 펜프로메타민(Phenpromethamine)
 - 스테나볼릭(Stenabolic)
 - 시네프린(Synephrine) : 권장 일일 복용량 30mg 이하로 표시된 원료 제외
 - 타다라필(Tadalafil)
 - 요힘빈(Yohimbine)
- 호주에서 사람이 소비한 전례가 없는 신규 성분이고,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, 인간의 건강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간주됨. 이 경우, 식품 안전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식품 첨가가 허용되지 않으며, 이 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은 불량 식품으로 평가됨
- 스포츠 보충제는 사람에게 특정한 영양성분을 제공하거나, 신체 특정 기능의 성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식품을 말함
- 하지만, 일부 '스포츠 보충제', 특히 캡슐 형태의 보충제들은 스포츠 보조 식품이 아니라 치료용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. 치료용품으로 간주될 경우 수입식품법이 아니라 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수입 통관이 결정됨

- 제품이 식품인지 치료용 상품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음. 섭취 시에 물이나 다른 음식과 섞는 가루 제품은 식품으로 간주됨
- 보충제가 치료제로 표현되거나, 제시되는 방식 때문에 누군가가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, 치료용 상품으로 간주되고 판매업자가 제품 라벨에 AUST L 번호를 부착하는 경우, 수입업자가 치료용 상품이라고 판단하여 호주 치료용 상품 등록부에 직접 입력했다는 것을 의미함

* 출처 : 호주 농업부

II

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자연산 또는 가공 연어 수입 검역 조건 강화

- 호주 농업부는 9월 1일 이후 발행된 선하증권으로 수입되는 모든 연어 제품에 강화된 수입 검역조건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
-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되지 않은 연어 제품 중 열처리를 받지 않은 수입연어는 열처리가 완료된 이후 수입업자에게 인계될 것이라고 밝힘
- 9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선하증권이 있는 제품은 이전 수입 조건이 적용됨
- 부적합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한 제품과 이 제품을 포함한 모든 다른 가공 식품은 재수출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밝힘

*출처 : 호주 농업부

1. 한국산 조개류 수입 보류 결정

- 호주 농업부는 호주에서 발생한 A형 간염의 발생에 대한 조사를 위해 뉴사우스 웨일즈 주 보건 당국과 협력해 왔으며, A형 간염의 발생이 한국에서 수입된 소금에 절인 조개류와 관련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음
- 호주 농업부는 한국산 조개류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될 때 까지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조개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
- 1992년 제정된 수입식품관리법 제15조 (3)항에 따르면 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
-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

*출처 : 호주 농업부

2. 호주, 뉴질랜드 들기름 및 들기름이 포함된 제품 수입 금지

- 2019년 8월 뉴질랜드 수입업체에서 들기름 성분이 들어간 조미김을 현지 대형유통매장에 판매하기 전 뉴질랜드 식품의약청(MPI)에서 식품안전평가 진행
- 식품의약청에서 들기름 성분은 호주뉴질랜드식품안전(FSANZ) 규정에 허용된 성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하였음
- 식품의약청(MPI)에서는 관행적으로 식품 성분에 대해 생물보안(Biosecurity)만 체크하고 통관을 진행하였으나 식품안전평가 과정에서 들기름 성분이 호주뉴질랜드 식품안전 규정의 허용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
- 최근까지 호주, 뉴질랜드로 들기름 및 들기름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 정상적으로 수입이 되어 지고 있었음
- 동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식품 주요 수입업체들은 뉴질랜드 식품의약청(MPI)에 들기름 및 들기름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통보
- 들기름 및 들기름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호주뉴질랜드식품안전(FSANZ) 규정 허용 성분 리스트에 추가 필요

*출처 : 호주 식품의약청(MPI)